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수교육교원 추가 배치 근거 마련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16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0.
3. 회부연월일 : 2024.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보다 집중적인 교육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학급설치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더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u>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u> ,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 ----- ----- ----- ----- ----- <u>하향 조정하거나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며</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7조제1항1)은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치원 과정, 초등·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별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인원 기준이 정해짐.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제1항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2항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 완화 외에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 대하여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특수교육교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종래 「특수교육법」에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난 2021년 12월 「특수교육법」 개정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포함되도록 법 제15조가 개정²⁾됨. 이와 함께 학급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제27조제2항의 개정 또한 이루어짐. 참고로, 법 시행령³⁾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로 구분하고 있음.

< 중도중복장애 · 시청각장애 학생 현황 >

(단위: 명, '24.4.1. 기준)

연도	학교구분		유	초	중	고	합계
2024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18	219	114	182	533
		시청각장애	-	-	-	1	1
		소계	18	219	114	183	534
	일반학교	중도중복장애	12	102	40	48	202
		시청각장애	-	-	1	-	1
		소계	12	102	41	48	203
합계		30	321	155	195	737	

자료: 교육부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한편, 「특수교육법」 제27조제3항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해당 시행령⁴⁾에 따른 배치 기준 역시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함께 개정된바,

현행 규정은 학생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1명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지역의 여건이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상으로도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최대 학생 2명당 특수교육교원 1명이 배치될 수 있음.

개정안은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중도중복장애 또는 시청각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에 특수교육교원이 추가로 배치된 사례에 대한 통계 파악은 어려운 상황임.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입법 취지에 동감하나, 현행법이 이미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교원의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배치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배치할 수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8조⁵⁾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6

5) 「정부조직법」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